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92번지 일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석수동 241-43번지 일원의 블루몬테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6. 7. 28.

안 양 시 장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변경)
 -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기정)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합계	25	4,662.0	42,236.3	1	30.0	337.9	5	1,631.0	24,383.8	19	3,001.0	17,514.6
중로	2	1,366.0	22,239.4	-	-	-	2	1,366.0	22,239.4	-	-	-
소로	23	3,296.0	19,996.9	1	30.0	337.9	3	265.0	2,144.4	19	3,001.0	17,514.6

(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합계	26	4,756.0	43,606.3	1	30.0	337.9	5	1,631.0	24,383.8	20	3,095.0	18,884.6
중로	3	1,460.0	23,609.4	-	-	-	2	1,366.0	22,239.4	1	94.0	1,370.0
소로	23	3,296.0	19,996.9	1	30.0	337.9	3	265.0	2,144.4	19	3,001.0	17,514.6

■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A	14.5	국지도로	94	중로 2-2 (석수동 851도)	석수동 834대	일반도로	삼성천 마을	-	

■ 도로 결정(변경)(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A	◦중로3-A 도로 신설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2)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변경)

가. 주택용지(변경)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	
기 정	0	12,143.9	1	석수동	241-44	5,010.1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포함(블루몬테) · 자발적 공동개발 (01, 02, 03, 04, 05)
			2	석수동	241-43	6,382.8	
			3	석수동	241-55	641.2	
			4	석수동	241-237	52.8	
			5	석수동	산22	57.0	
변 경	0	10,773.9	1	석수동	241-44	3,780.1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포함(블루몬테) · 자발적 공동개발 (01, 02, 03, 04, 05)
			2	석수동	241-43	6,242.8	
			3	석수동	241-55	641.2	
			4	석수동	241-237	52.8	
			5	석수동	산22	57.0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0	0	◦획지(1, 2) 면적 변경 - 획지1 면적: 5,010.1㎡ → 3,780.1㎡ (감 1,230.0㎡) - 획지2 면적: 6,382.8㎡ → 6,242.8㎡ (감 140.0㎡) ◦가구 면적 변경 - 면적: 12,143.9㎡ → 10,773.9㎡ (감 1,370.0㎡)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에 따른 가구 및 획지 조정

나. 녹지 등 공공용지(변경없음)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변경)

도면 번호	위 치(가구번호)	구 분	제 회 내 용	
R7	01, 02, 03, 04, 05	용 도	· 불허용도 A(변경) · 권장용도 g(변경)	
		건폐율	· 기준건폐율 50% 이하 · 허용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130% 이하 · 허용용적률 150% 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 치	기 정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해당대지에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6조 참조) · 차량출입구 위치와 일조권 방향이 상이할 경우 일조권 방향으로 차량출입구 위치를 조정(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9조 참조)
			변 경	· O블록(R7지역)에 한하여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해당대지에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제외(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6조 제외) · O블록(R7지역)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위치와 일조권방향이 상이 할 경우 일조권 방향으로 차량출입구 위치를 조정 제외(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9조 제외)
		형 태	기 정	· 건축물 1층의 형태 : 투시벽 비율 50% 이상, 투시형서터 사용(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6조 참조) · 경사지붕 규제
			변 경	· O블록(R7지역)에 한하여 건축물 1층의 형태 제외(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6조 제외) · O블록(R7지역)에 한하여 경사지붕 규제 제외(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8조의1 제외)
		색 채	· 지붕의 색상 : 암갈색 계열로 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1조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심도로변 2m, 이면도로변 1m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7조 및 도면 참조)	

■ 불허용도 계획표(변경)

[기정]

구 분	불 허 용 도
A [중심도로변]	<단독주택 중>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예외1) - 공관 <공동주택 중> - 다세대(예외1) -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건축자재 - 접골원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실내낚시터 - 종교집회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제조업소(예외3), 수리점,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학원(예외4), 직업훈련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동·식물원 <종교시설 중> - 종교집회장(기존시설 제외)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구 분	불 허 용 도
	〈운동시설 중〉 -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실내낚시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발전시설〉
A [중심도로변]	·예외1 : 1층 근린생활시설 포함시 4가구, 전층 주거용주택일 경우 8가구(1개층 2가구 제한, 지하층 주거불가) 허용 ※ 주상복합은 1개층에 1개 용도만 허용, R5지역 1층 주거허용 ·예외3 : 경기도 향토지적재산 제조업과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제조업은 1층,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 ·예외4 :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보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한하여 허용
A [이면도로변]	〈단독주택 중〉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예외1) - 공관 〈공동주택 중〉 - 다세대(예외1) -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집골원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실내낚시터 - 종교집회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제조업소(예외3), 수리점,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학원(예외4), 직업훈련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동·식물원 〈종교시설 중〉 - 종교집회장(기존시설 제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단, L5-1, L5-2 한하여 아동관련시설 허용) 〈운동시설 중〉 -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실내낚시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발전시설〉 〈업무시설〉 (단, L5-1, L5-2 한하여 업무시설 중 사무소 허용)
	·예외1 : 1층 근린생활시설 포함시 4가구, 전층 주거용주택일 경우 8가구 (1개층 2가구 제한, 지하층 주거불가) 허용 ※ 주상복합은 1개층에 1개 용도만 허용, R5지역 1층 주거허용 ·예외3 : 경기도 향토지적재산 제조업과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제조업은 1층,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 ·예외4 :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보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한하여 허용

[변경]

구 분	불 허 용 도
A [중심도로변]	〈단독주택 중〉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예외1) - 공관 〈공동주택 중〉 - 다세대(예외1) -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예외5)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건축자재 - 집골원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실내낚시터 - 종교집회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제조업소(예외3), 수리점,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학원(예외4), 직업훈련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동·식물원 〈종교시설 중〉 - 종교집회장(기존시설 제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중〉 - 옥외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실내낚시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발전시설〉
A [중심도로변]	·예외1 : 1층 근린생활시설 포함시 4가구, 전층 주거용주택일 경우 8가구(1개층 2가구 제한, 지하층 주거불가) 허용 ※ 주상복합은 1개층에 1개 용도만 허용, R5지역 1층 주거허용 ·예외3 : 경기도 향토지적재산 제조업과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제조업은 1층,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 ·예외4 :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보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한하여 허용 ·예외5 : 0블록(R7지역) 기숙사 허용(기숙사 용도일 경우 세대수제한 없음)
A [이면도로변]	〈단독주택 중〉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예외1) - 공관 〈공동주택 중〉 - 다세대(예외1) -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예외5)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집골원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실내낚시터 - 종교집회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제조업소(예외3), 수리점,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학원(예외4), 직업훈련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동·식물원

구 분	불 허 용 도
	<종교시설 중> - 종교집회장(기존시설 제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단, L5-1, L5-2 한하여 아동관련시설 허용) <운동시설 중> -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실내낚시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발전시설> <업무시설> (단, L5-1, L5-2 한하여 업무시설 중 사무소 허용) ·예외1 : 1층 근린생활시설 포함시 4가구, 전층 주거용주택일 경우 8가구 (1개층 2가구 제한, 지하층 주거불가) 허용 ※ 주상복합은 1개층에 1개 용도만 허용, R5지역 1층 주거허용 ·예외3 : 경기도 향토지적재산 제조업과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제조업은 1층,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 ·예외4 :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보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한하여 허용 ·예외5 : O블록(R7지역) 기숙사 허용(기숙사 용도일 경우 세대수제한 없음)

■ 불허용도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불허용도A - O블록(R7지역) 기숙사 허용	◦시설 노후화 및 이용률 감소로 부지 유효화가 가속되고 있는 유스호스텔 부지에 기숙사 건축을 통해 도시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불허용도 변경

■ 권장용도 계획표(변경)

구분	해당지역	권 장 용 도
a	R1 (유희/편익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기념품 판매점, 향토식품, 전통공예품) 등 이와 유사한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탁구장, 사진관, 사무실, 표구점, 서점 등 이와 유사한 용도
b	R2 (낙원마을/전원주택촌)	·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기념품판매점, 전통공예점 등 이와 유사한 용도
c	R3 (종교시설)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이와 유사한 용도
d	R4 (카페촌/문화집회시설)	· 카페, 커피숍 이와 유사한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과 이와 유사한 용도
e	R5 (휴양촌)	· 휴양(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노인/은퇴자주거)등 이와 유사한 용도
f	R6 (음식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g	기정 R7 (연수원, 수련원)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연수원과 유사한 용도) · 수련시설
	변경 R7	-

-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전체용도 중 당해 용도가 연면적의 50%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층 이상일 경우는 1층 면적의 70% 이상을 당해 용도로 확보하였을 경우 권장용도 수용으로 인정

■ 권장용도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권장용도g - 권장용도 삭제	◦시설 노후화 및 이용률 감소로 부지 유휴화가 가속되고 있는 유스호스텔 부지에 기숙사 건축을 통해 도시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권장용도 삭제

■ 완화용도 계획표(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도면표시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가 구 수	주택 용지	기정	· 1층 근린생활시설 포함시 4가구, 전층 주거용주택일 경우 8가구 (한개층 2가구 제한, 지하층 주거 불가) 허용 · 주상복합 1개층 1개용도만 허용, R5지역 지하층 주거허용 · R2지역 다가구주택은 2가구 허용, 1개층에 1가구로 제한, 지하층 주거불가 (단, 안흥사일원(N1~N16) 외 다가구다세대주택은 4가구 허용, 1개층에 2가구로 제한, 지하층 주거불가)	-
		변경	-	
대지내 공지 (전면부공지)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으로 확보되는 공간		· 보도가 있는 경우 보도와 일체 조성 · 주차장, 보행장애시설 설치금지	권 장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B1, C13, E1, E8, I1, J1, L5-2, M1		· 주요 가각부에 대지내 공지를 집 중 배치 조성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5조 참조)	권 장
주 차 장 설 치	주택용지		· 주택용지에 대하여 세대당 1대 이상 확보	-
차량출입 금지구간	A, B, C, D, E, I, J 가구의 일부구간		· 중심도로 주요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주 차 출 입 구	전지역의 주요구간		· 차량출입구의 위치와 폭은 필지별 입지여건과 주차대수를 고려하여 결정	-
공동주차 출 입 구	전지역의 주요구간		· 주차출입구 지정시 인접 필지간 공동주차 출입구(6~10m)를 동시 지정	-
일방통행 구 간	D, F 가구의 일부구간		· 하천변 주요 이면도로상 일방통행 구간 지정	소로 3-1489호선
특별계획 구 역	-		· 특별계획구역 지정 - 토지이용계획수립 제안 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기타사항 가구수 삭제	◦불허용도 계획의 예외사항에 대하여 중복 기재된 내용으로 삭제

□ 열람 일시 및 장소

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7. 28. ~ 2026. 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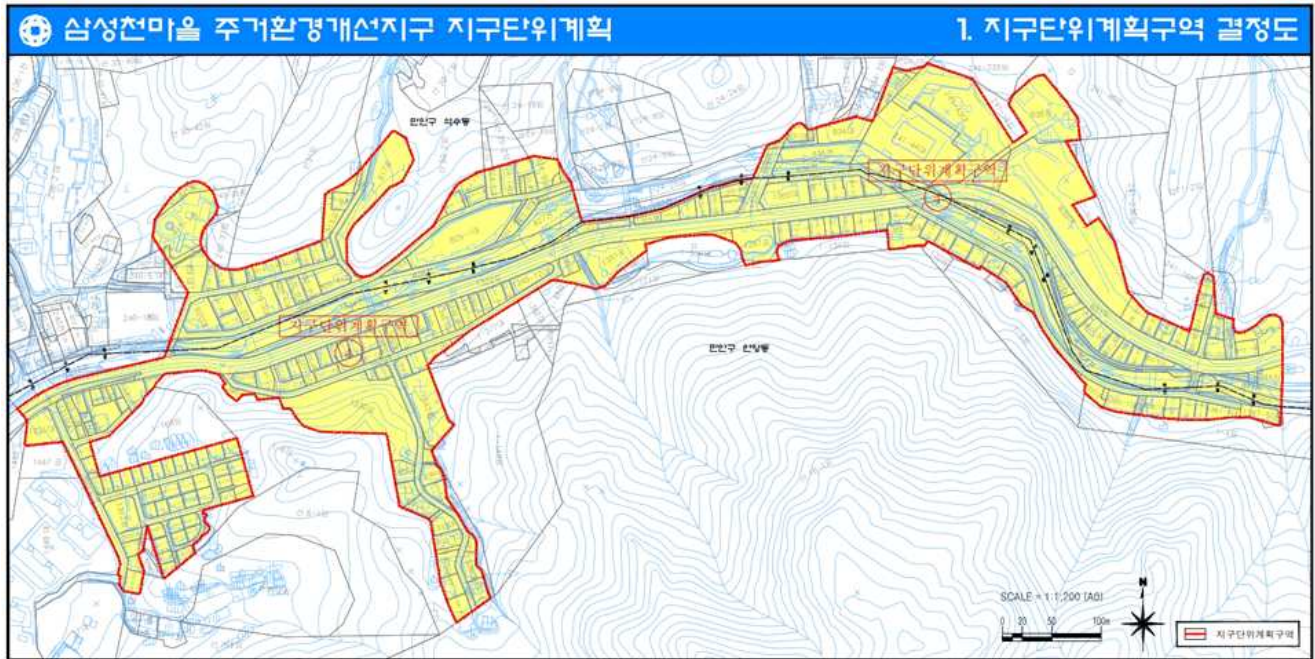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2567)

다. 관련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라.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도(참고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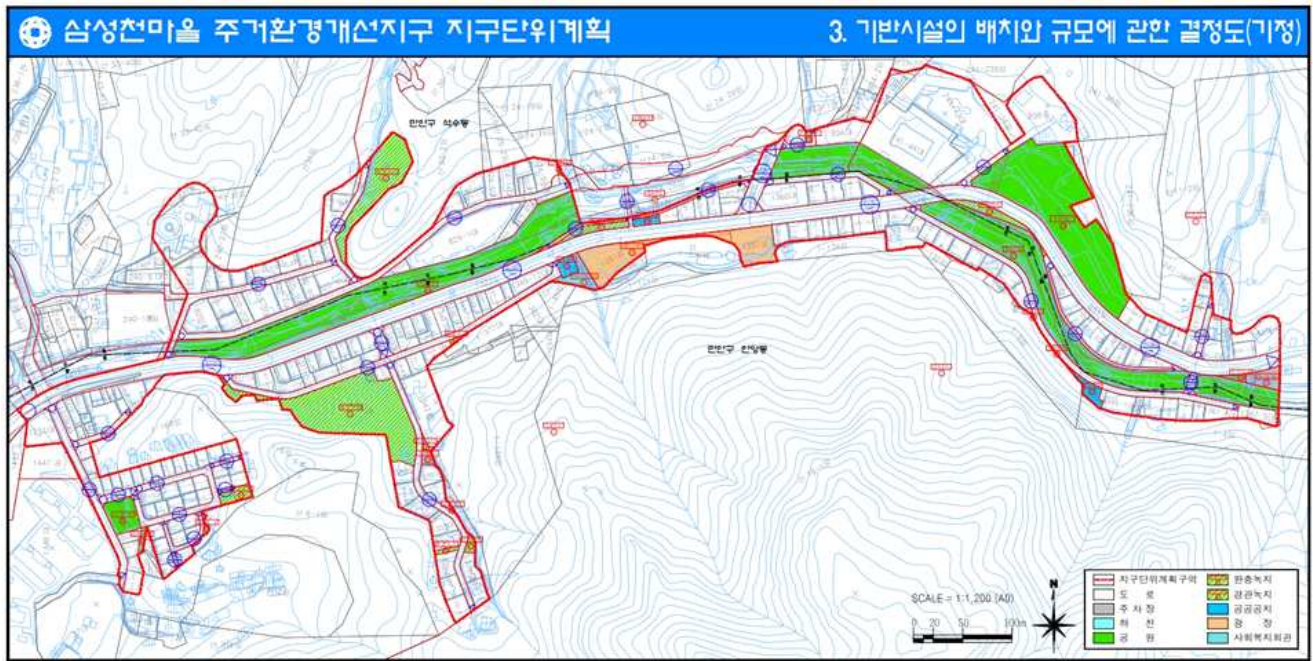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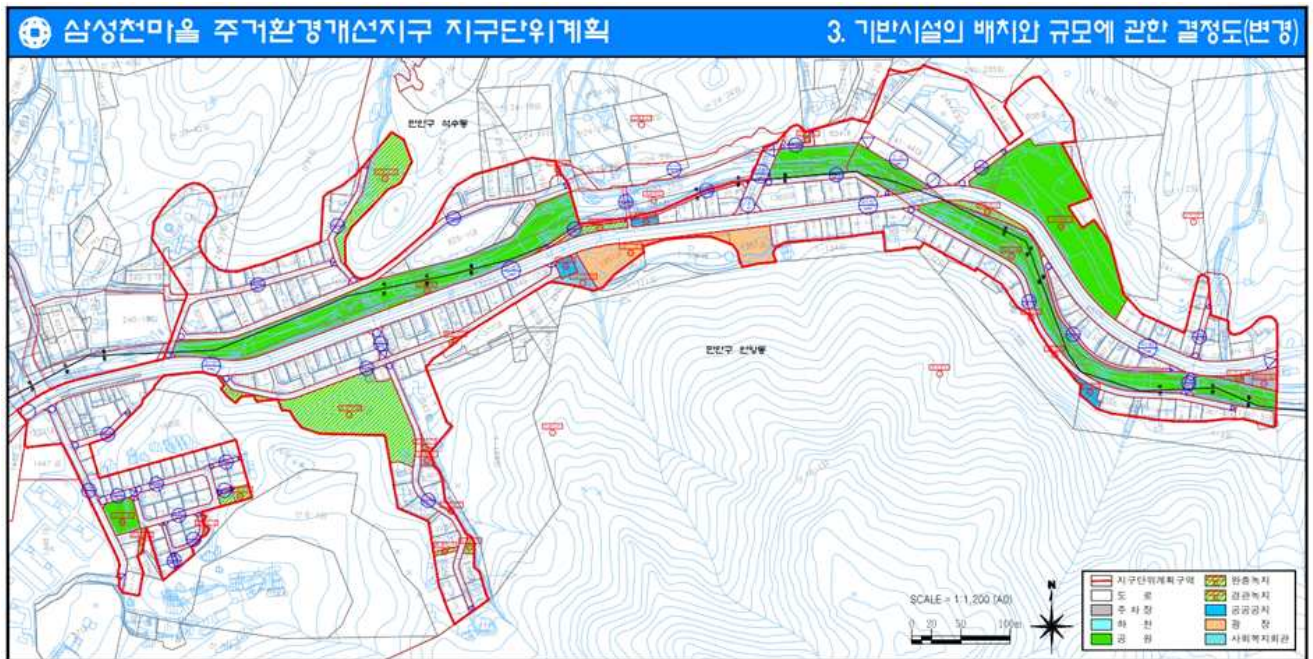
2.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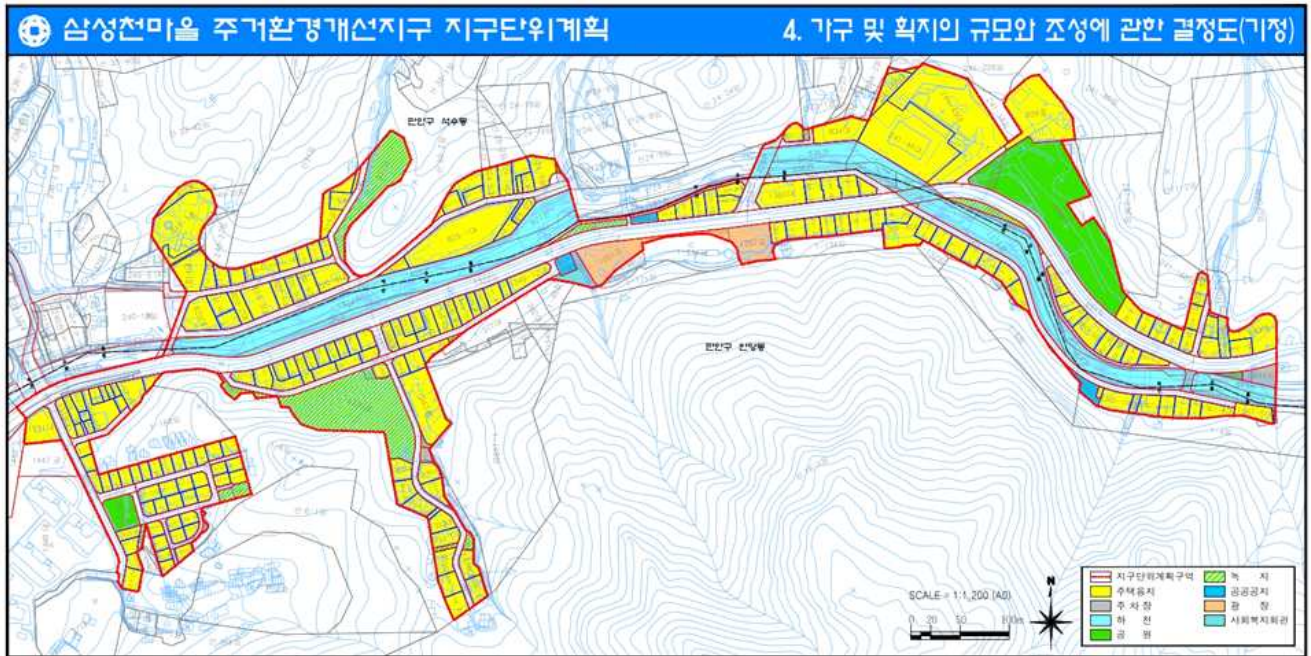
3-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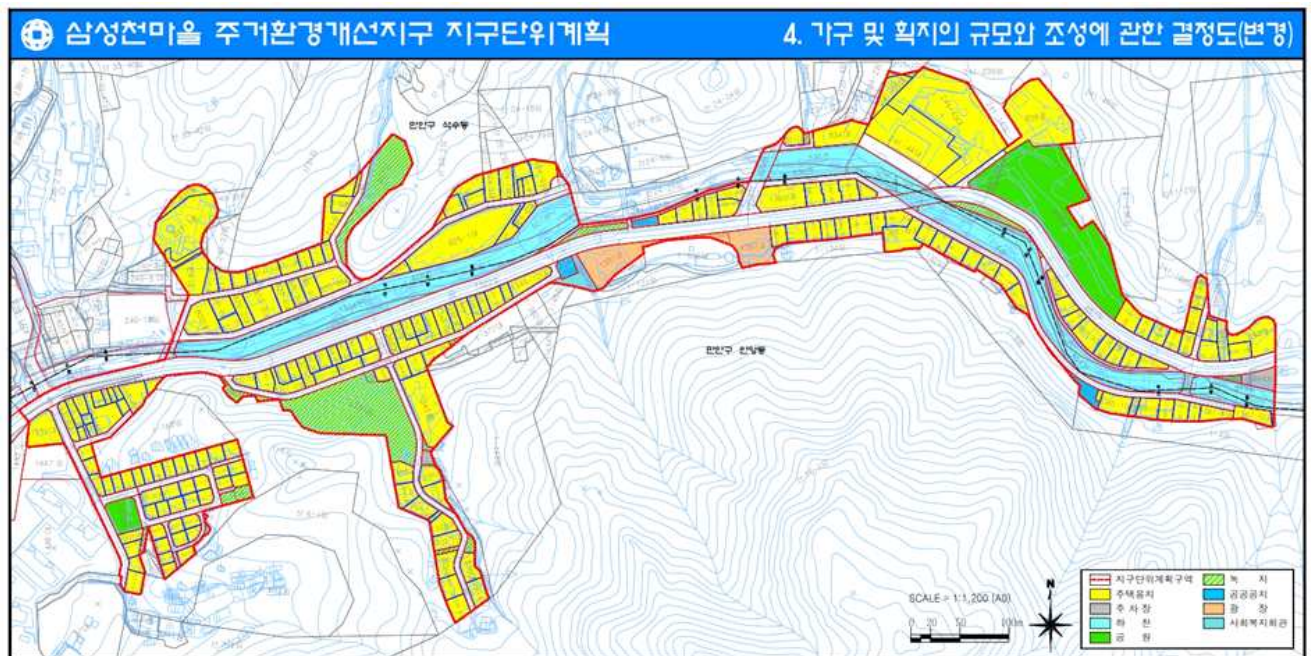
3-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4-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기정)도



4-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단위계획

5.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SCALE = 1:1,200 (A0)

상세설명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1.10	1.1.1.11	1.1.1.12
1.1.1.13	1.1.1.14	1.1.1.15	1.1.1.16
1.1.1.17	1.1.1.18	1.1.1.19	1.1.1.20
1.1.1.21	1.1.1.22	1.1.1.23	1.1.1.24
1.1.1.25	1.1.1.26	1.1.1.27	1.1.1.28
1.1.1.29	1.1.1.30	1.1.1.31	1.1.1.32
1.1.1.33	1.1.1.34	1.1.1.35	1.1.1.36
1.1.1.37	1.1.1.38	1.1.1.39	1.1.1.40
1.1.1.41	1.1.1.42	1.1.1.43	1.1.1.44
1.1.1.45	1.1.1.46	1.1.1.47	1.1.1.48
1.1.1.49	1.1.1.50	1.1.1.51	1.1.1.52
1.1.1.53	1.1.1.54	1.1.1.55	1.1.1.56
1.1.1.57	1.1.1.58	1.1.1.59	1.1.1.60
1.1.1.61	1.1.1.62	1.1.1.63	1.1.1.64
1.1.1.65	1.1.1.66	1.1.1.67	1.1.1.68
1.1.1.69	1.1.1.70	1.1.1.71	1.1.1.72
1.1.1.73	1.1.1.74	1.1.1.75	1.1.1.76
1.1.1.77	1.1.1.78	1.1.1.79	1.1.1.80
1.1.1.81	1.1.1.82	1.1.1.83	1.1.1.84
1.1.1.85	1.1.1.86	1.1.1.87	1.1.1.88
1.1.1.89	1.1.1.90	1.1.1.91	1.1.1.92
1.1.1.93	1.1.1.94	1.1.1.95	1.1.1.96
1.1.1.97	1.1.1.98	1.1.1.99	1.1.1.100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단위계획 **5.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SCALE = 1:1,206 (A0)

100m

북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1	주거지역	1.1	주거지역
1.2	주거지역	1.2	주거지역
1.3	주거지역	1.3	주거지역
1.4	주거지역	1.4	주거지역
1.5	주거지역	1.5	주거지역
1.6	주거지역	1.6	주거지역
1.7	주거지역	1.7	주거지역
1.8	주거지역	1.8	주거지역
1.9	주거지역	1.9	주거지역
1.10	주거지역	1.10	주거지역
1.11	주거지역	1.11	주거지역
1.12	주거지역	1.12	주거지역
1.13	주거지역	1.13	주거지역
1.14	주거지역	1.14	주거지역
1.15	주거지역	1.15	주거지역
1.16	주거지역	1.16	주거지역
1.17	주거지역	1.17	주거지역
1.18	주거지역	1.18	주거지역
1.19	주거지역	1.19	주거지역
1.20	주거지역	1.20	주거지역
1.21	주거지역	1.21	주거지역
1.22	주거지역	1.22	주거지역
1.23	주거지역	1.23	주거지역
1.24	주거지역	1.24	주거지역
1.25	주거지역	1.25	주거지역
1.26	주거지역	1.26	주거지역
1.27	주거지역	1.27	주거지역
1.28	주거지역	1.28	주거지역
1.29	주거지역	1.29	주거지역
1.30	주거지역	1.30	주거지역
1.31	주거지역	1.31	주거지역
1.32	주거지역	1.32	주거지역
1.33	주거지역	1.33	주거지역
1.34	주거지역	1.34	주거지역
1.35	주거지역	1.35	주거지역
1.36	주거지역	1.36	주거지역
1.37	주거지역	1.37	주거지역
1.38	주거지역	1.38	주거지역
1.39	주거지역	1.39	주거지역
1.40	주거지역	1.40	주거지역
1.41	주거지역	1.41	주거지역
1.42	주거지역	1.42	주거지역
1.43	주거지역	1.43	주거지역
1.44	주거지역	1.44	주거지역
1.45	주거지역	1.45	주거지역
1.46	주거지역	1.46	주거지역
1.47	주거지역	1.47	주거지역
1.48	주거지역	1.48	주거지역
1.49	주거지역	1.49	주거지역
1.50	주거지역	1.50	주거지역
1.51	주거지역	1.51	주거지역
1.52	주거지역	1.52	주거지역
1.53	주거지역	1.53	주거지역
1.54	주거지역	1.54	주거지역
1.55	주거지역	1.55	주거지역
1.56	주거지역	1.56	주거지역
1.57	주거지역	1.57	주거지역
1.58	주거지역	1.58	주거지역
1.59	주거지역	1.59	주거지역
1.60	주거지역	1.60	주거지역
1.61	주거지역	1.61	주거지역
1.62	주거지역	1.62	주거지역
1.63	주거지역	1.63	주거지역
1.64	주거지역	1.64	주거지역
1.65	주거지역	1.65	주거지역
1.66	주거지역	1.66	주거지역
1.67	주거지역	1.67	주거지역
1.68	주거지역	1.68	주거지역
1.69	주거지역	1.69	주거지역
1.70	주거지역	1.70	주거지역
1.71	주거지역	1.71	주거지역
1.72	주거지역	1.72	주거지역
1.73	주거지역	1.73	주거지역
1.74	주거지역	1.74	주거지역
1.75	주거지역	1.75	주거지역
1.76	주거지역	1.76	주거지역
1.77	주거지역	1.77	주거지역
1.78	주거지역	1.78	주거지역
1.79	주거지역	1.79	주거지역
1.80	주거지역	1.80	주거지역
1.81	주거지역	1.81	주거지역
1.82	주거지역	1.82	주거지역
1.83	주거지역	1.83	주거지역
1.84	주거지역	1.8	